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

행정대집행 계고서

성명: 강 ○ 순 귀하
주소: 미상

2026년 5월 15일 현재, 귀하 소유의 아래 적치물에 대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**자진 수거 및 원상회복**하도록 명령하였으나, 이행되지 않았습니다.

이에 따라, 국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**2026년 6월 19일까지 반드시 자진 수거 및 원상회복될 수** 있도록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**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구 가로경관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**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과 또는 **「국유재산법」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이 징수될 수 있음**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면적	대집행 방법
*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9-26 (철도용지, 국유지)	* 적치물 (야채, 수레 등)	* 약 2.5㎡ * 약 2.24㎡	* 자진 수거

2026년 5월 18일

구 로 구 청 장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